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창호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박봉순 의원 등 7명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7년 8월 21일

○ 회부일자 : 2017년 8월 24일

3. 개정이유

-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6. 7. 7일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016. 8. 30일 시행)이 개정되어,
- 지역 차원의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4. 주요내용

- 법률의 명칭·용어 변경사항 반영
 - 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명칭을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안 제2조)
-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안 제3조)
- 전기 사용 광고물,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입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등의 구체적 표시방법(안 제4조부터 안 제17조까지)
- 표시방법의 완화 및 강화(안 제18조 및 안 제21조)
-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안 제20조)
-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안 제22조)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 등(안 제23조 및 안 제24조)
- 광고물 실명제(안 제26조, 수수료(안 제27조) 등

5.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상위 법률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6.1.6.) 및 같은 법 시행령(2016.7.6.)이 개정되어, 지역 차원의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조례의 명칭을 「충청북도 옥외광고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둘째, 관련법령에 의거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 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규정 개정,

셋째, 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의 추가적인 표시방법과 광고물등의 면적 산정 기준마련

넷째, 안 제4조에서 제17조까지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입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등의 구체적 표시방법

다섯째,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구체화 및 표시방법의 강화

여섯째,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일곱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여덟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명시

아홉째, 광고물 실명제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차원의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